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. 11. 4 선고 2020가단1352 판결

[채무부존재확인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0. 21.

판결 선고2020. 11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. 1. 31. 접수 제22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김선영

별지